

운영규정 개요

기관명	보은재가복지센터	설치일자	2019년 6월 1일
시설종류	재가노인복지시설	급여종류	방문요양
전화번호	02-933-0946	FAX	02-930-0946
주 소	서울 노원구 덕릉로118길 29 불암현대 상가 113호		
이용대상	‘65세이상의 노인’ 또는 치매·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‘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인정받은 자		

입소계약	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.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약해지	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이용료	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.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880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2,160	240분 이상	68,03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 (치매특별등급)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, 9%

-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 - 방문요양 : 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
 -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.
 -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(배상책임)
 -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
 (면책범위)
 -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
 -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
 -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
 -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
 -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, 입원, 사망한 경우
-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 - 불만 및 고충 접수(서면, 유선, 이메일) →기록 및 보고→조치→고충처리결과 통보 및 완료
-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 - 인력관리 규정, 보수에 관한 사항, 복리후생,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

◆ 최 저 임 금 고 시 ◆

적용 년도	적용대상	최저임금액 (주40시간 기준)			인상률 (%)
		시급	일급	월급	
2025	모든 사업장	10,030	80,240	2,096,270	1.7%
2024	모든 사업장	9,860	78,880	2,060,740	2.5%